

- 목 차 -

NO	질문내용	PAGE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1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1
3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2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2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3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3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3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4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4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5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5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6
14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6
15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6
1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6
17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7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7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 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8

NO	질문내용	PAGE
20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8
2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9
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9
2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9
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0
25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0
26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11
27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 사용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1
28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12
29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3
30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13
31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3
32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14
3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14
3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15
36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
3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15
38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15

NO	질문내용	PAGE
39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16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17
41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17
4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18
4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18
4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9
4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9
46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20
4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20
48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20
49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1
50	회사에서 '23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4.1.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21
51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22
52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22
5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23
5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23

NO	질문내용	PAGE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4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4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25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6
5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 간편한지?	27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28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28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9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9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9
11	직장인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30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30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3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이용방법 등】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4. 1. 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4. 1. 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15.~1.17.
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 1. 7. 22시
	(부득이한 경우)	'24. 1. 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4.1.15.~1.18.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 ~ 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3년 귀속 연말정산('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영화관람료, ③ 고용보험료, ④ 수능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부터 조회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 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 이상 자료가 추가·수정되지 않습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¹⁾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²⁾, 실업크레딧 납부금액³⁾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공제구분	공제 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0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 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는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4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15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 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0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추가수집이나 자료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를 1월 20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조회됩니다.

- 한편,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주택마련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 '24년 1월에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3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21~'22년에 '23년으로 공제시기 변경 신청을 한 금액이 조회됩니다.
- 다만, '23년에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나, 본인이 투자기관에 공제받을 시기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신청 연도의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 신청 가능

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제외 재화·용역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 이를 기초로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① 전체 사용금액, ② 공제제외 대상금액, ③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별도로 표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2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26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 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은 Q&A 23번 참조

27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 ①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 ②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영화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 금액(자료구분 국세청)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집계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5,000,000	-	-	-	5,000,000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 ^{*1}					
기타				300,000 ^{*2}		

*1 : 5,000,000(신용카드) - 300,000(구분되지 않은 도서공연등 사용분) = 4,700,000원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액 = 300,000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8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신용카드'란에 전통시장 사용분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도서공연등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기부금
국세청	신용카드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기타					전통시장 사용분기재		

29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32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4.1. 15.~1. 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 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 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6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3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38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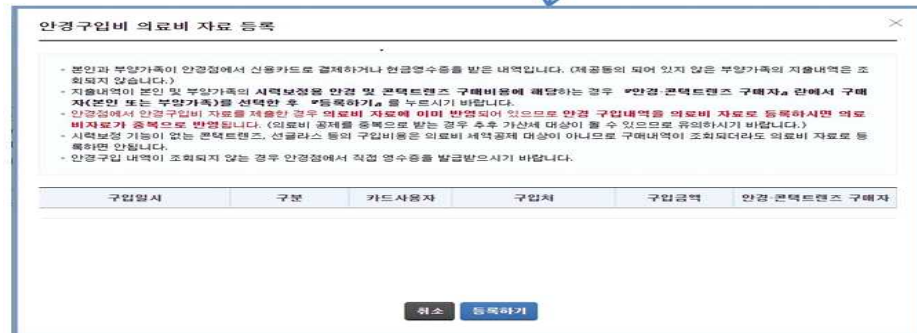
39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등록 방법

- ①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입정보」를 클릭
- ② 아래에 활성화 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 ③ 등록하기 선택 ⇒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됨



4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1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화면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의료비 안내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 의료비

인별 선택	환자	사업자번호	상호	종류	지출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120-01-61474	차주	산후조리...	1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101-91-56996	아무개	산후조리...	1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101-22-34567	대원E&L	의료기기...	3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101-22-34567	대원E&L	안경 도...	36,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트개인	101-22-34567	대원E&L	산후조리...	25,000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인별 선택	수익자	상호(보험사명)	계약(증권)번호	상품명	수령금액	피보험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	완파RN	359378402304	실손보험1	550,000	민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	완파RN	218352331206	실손보험1	550,000	민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	차주	2245714545...	무)상생생명...	763,420	틀산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	완파RN	348186777786	실손보험1	600,000	민공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테스...	차주	3198446633...	무)통합스마...	963,270	서범유

선택: 24 건 선합계 20,416,580 원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활용

- ①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의료비 기본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함께 다운로드(인쇄)됩니다.
- ② 다른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고, 이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 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되지 않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접속 경로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 ⇨ ‘학생명’ 선택하고 등록하기

46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48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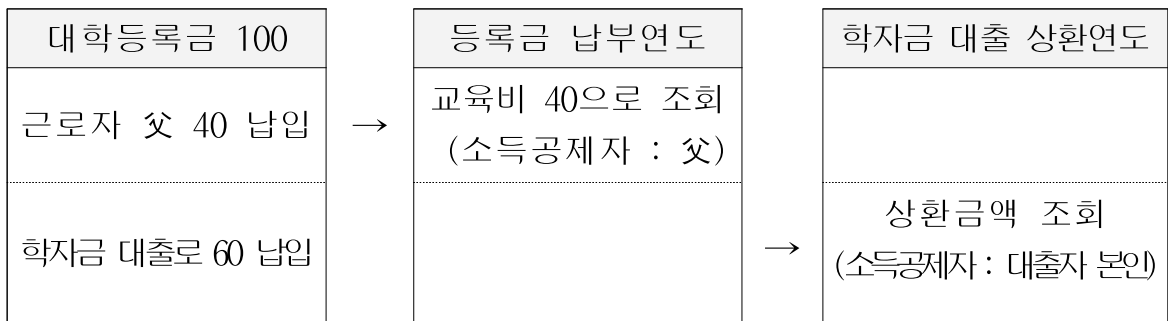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9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사례>



50

회사에서 '23년 12월에 공제한 학자금 상환액을 '24. 1. 10.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상환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상환금액은 회사에서 '24. 1. 10. 까지 신고 납부한 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24. 1. 11. 이후에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24. 1. 23.까지 신고한 자료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1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24.1.23.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52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24. 1. 10.까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5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54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23.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1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년(19세 이상 : 2004년생)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2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미성년 자녀(2005년생 이후 출생)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4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온라인에서 신청서, 위임장 출력하는 방법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 세무서 방문신청 ⇨ 서식 다운로드

세무서 방문 신청

[최우선]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언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세무서 제출 순서

- 1. 서식 다운로드**
본인신청 : 제공동의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신청 :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다운로드
- 2. 작성**
-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허용, 여권 등)
대리인신청 : 신청인 신분증사본, 민원서류 위임장
공통 :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언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정보 제공자
- 3. 가까운 세무서 접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구분: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위임장

서식다운로드: [PDF 아이콘]

폼어 다운로드: [PDF 아이콘]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Q&A 4번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6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8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9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0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
동의 현황조회 ⇨ 취소

11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 입니다.
-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
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조회 ⇨ 취소
(모바일) 홈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
동의 현황조회 ⇨ 취소

1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13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

- (삭제 신청 종류) ①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